

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

1. 과 제 명: 시정권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일 시: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3. 장 소: 보호원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4. 참석위원: 총 5명
5. 회의내용 및 결과

o 평가결과: “합격”

o 과제 관련 검토의견

-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침해는 광범위하여 권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을 규정하여 일반인 신고나 보호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일 것임. 권리자 신고제도 도입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또한 유사기관의 경우에는 법조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1인 단독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1인 심의제도 도입시 위원 자격을 한정하든지,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만한 요건을 두어야 할 것임.
- 시정권고의 처분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마련보다는 저작권법상 심의제도와 다른 유사제도와의 차이점을 밝혀 이 제도의 특성을 강조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임.
- 처분내용에 따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전문위원 의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체나 전문가 활용을 법적 근거화하여 전문위원 의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오래된 저작물·기계적 내용에 대해서 심의제도를 간소화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정책연구 용역과제 평가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7.